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국고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신속한 자금집행 등 국고금관리 운용상 필요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등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사·제조·용역 계약시 선금 지급한도의 한시적 확대 근거 마련
(안 제40조제1항)

- 1) 중앙관서의 장이 신속한 자금집행 등 국고금관리 운용상 필요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한시적으로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에 제1항 제15호를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에서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신속한 자금집행 등 국고금관리 운용상 필요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선급) ①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선급) ①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4 (생 략)	1~14 (현행과 같음)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u>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신속한 자금집행 등 국고금관리 운용상 필요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80</u>)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6~18 (생 략)	16~1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고과	
연 락 처	(044) 215 - 5113